

-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모집 공고

서울 노원구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노 원 구 장



1.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공 고 일 : 2021. 8. 10.(화)
- 접수기간 : 2021. 8. 17.(화) 09:00 ~ 2021. 10. 15.(금) 18:00
- 지원대상 : 노원구 거주, 최종학력 졸업년도 2년 이내의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 ※1차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상반기) 선정자는 신청 불가능(타 자치구 선정자 포함)
 - 출생년도(1986. 1. 1. ~ 2002. 12. 31.)
 - 2019. 1. 1. ~ 2021. 8. 31. 사이에 졸업(수료·제적)한 청년
 - ※ 최종학력 졸업 후 군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지원대상 제외
 - 신청일 현재 중복사업(‘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1년 청년수당 등 타 지원금) 참여자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모바일 ‘노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선정방법 : 정량평가

2. 신청 자격·요건

□ 사업 참여요건 (아래 5가지 모두 충족)

- ① 만19~34세 청년(주민등록상 1986. 1. 1. ~ 2002. 12. 31. 출생자)
- ②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노원구 거주자**
 - ※ 단, 공고기간 중 서울시 내의 타 자치구에서 노원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청년은 신청 가능
 - ※ 타 자치구에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이력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 *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증빙 필요
- ④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연도가 2년 이내인 사람**
 - 2019. 1. 1. ~ 2021. 8. 31. 기간 내에 졸업·수료·중퇴·제적한 청년
 - ※ 공고일 기준,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휴학생은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등 재학생은 이전 학력 졸업이 2년 이내면 신청 가능)
 - ※ 검정고시,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등 졸업자(학위수여자)는 이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단, 최종학력 졸업 이후에 군 입대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는 복무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군복무에 소요되었던 기간만큼 제외하고 계산하여 기준 충족({최종학력 졸업년월 + 군복무소요기간}의 계산결과가 `19년 1월 1일 이후) 시 신청가능 *장교·부사관 복무는 제외
 - 예시) `17년 8월 대학 졸업 후 18개월 간 복무한 경우, 위 계산 결과가 `19년 2월이므로 지원 가능
 - ⇒ 노원구에서는 시-자치구 민생협력사업의 “자율지원 항목”으로 지원합니다.
- ⑤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가 아니며, **중복사업**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1년 청년수당 등 타 지원 사업) **참여자가 아닌 사람**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신청절차: 자가체크→거주지(노원구) 확인→정보활용동의→정보가입→서류제출

※ 접수 후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 제출 서류는 **공고일(21. 8. 10.) 이후 발급받은 공식 서류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사진일 경우 글씨가 보이도록 선명하게 찍어 제출 (화면캡처는 미인정 될 수 있음)
- ※ 모든 서류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이 발급 가능

① [필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발급일자, 전입일자, 신청자 주민번호 앞자리가 기재된 서류의 전체 페이지를 제출

②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상용이력으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화면 캡처본 인정([서울청년포털 FAQ 바로가기](#) 참고) ※ 가입이력 내역 있을 경우 내역서 발급하여 제출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증명서 상 졸업(수료·제적) 일자 및 학교명과 학교 직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미리보기 화면캡처 시 해당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 대학교 수료자/제적자는 수료/제적 일자가 명시된 수료증명서/제적증명서를 제출
 - * 수료증명서에 수료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마지막 이수학기 확인용) 함께 제출
 -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외국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공식서류와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을 함께 압축 파일 형태로 제출
- 검정고시/학점은행제 등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학위취득증명서 제출

※ 아래 ④, ⑤는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로서 [선택1] / [선택2]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청년포털 신청화면 상의 ‘근로계약서(선택입력사항)’ 첨부란에 2가지 서류를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④ [선택1]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된 계약기간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만 제출
- 이미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된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⑤ [선택2] 병적증명서 1부(군 복무기간 또는 입대일, 전역일이 명시되어 있는 증명서)

- 최종학력 졸업이후에 군 입대하여 복무를 마친 사람 중 복무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

4. 선정 및 발표

□ 정량평가

- 심사검증위원회 구성하여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 검증
 - 검증내용: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졸업일 2년 미경과,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단기근로 여부, 실업급여 수급 및 대상 여부,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여부, '21년 청년수당 참여 여부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 ※ 서류 검증 및 지급까지 약 3주 소요 예정
- 신청기간 내 상시 검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예정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선 연락을 통해 보완해야 할 서류 개별 안내 예정, 연락 부재 및 서류 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 에서 개인별 확인

- ※ 선정 후 상품권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의 '소비자 가이드' 를 참고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으로 문의

5. 기타(유의)사항

□ 부정수급 관련

- 부정수급이라 함은 취업장려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대상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유형으로는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 제출(대학교 재학생이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혹은 대학원 재학생이 학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위·변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급액 환수 및 추후 청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FAQ](#)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거나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02-2116-06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 제출 서류 별 발급처

※ 노원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확인([확인 바로가기](#))

서류	발급처	비고
<p>[필수] 주민등록 등본(초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www.gov.kr)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p>※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일, 전입일(변동일), 신청자 성명 및 생년월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p>[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 역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www.gov.kr)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통해 FAX 발급 및 수령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고용,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선택)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p>※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구분 산재/고용 중 고용, 조회구분 상용/일용 중 상용 선택 <u>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만</u> 로그인화면과 조회화면 캡처본을 인정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시, 반드시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 서울청년포털 FAQ 바로가기 참고
<p>[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www.gov.kr) 각 학교 포털사이트 학교 직접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장(학위기), 학위취득증명서로 대체 가능
<p>[선택1]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증인(혹은 근로했었던)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증인(혹은 근로했었던) 사업장 측 관리자의 확인(직인, 서명 등)이 있는 문서 주 근로 시간(26시간 이하) 혹은 근로계약 기간(3개월 이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함
<p>[선택2] 병적증명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대일, 전역일 반드시 포함

노원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FAQ

Q1.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A. 서류 검증 및 심사 후 지급까지 약 3주 소요

Q2. 개명했는데 제출 서류에는 개명 전 이름이 나오는 경우

A.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증명

Q3. 신청 페이지에서 “만 19세~34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은 해당 나이에 포함되나요?” 라고 나오는데 2002년생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데 신청 가능한지?

A. 1986.1.1. ~ 2002.12.31. 출생자라면 신청 대상자이므로 ‘예’ 클릭하고 진행

Q4. 서울의 타 구에서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노원구에 이사 온 경우

A. 공고일 이전에도 서울에서 거주한 경우, 노원구에서 신청가능
단, 공고일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초본 제출
* 타구에서 이미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

Q5. 등본, 초본을 여러 페이지 발급한 경우

A. 전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하며,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거나 사진으로 선명하게 촬영하여 첨부

Q6. 발급한 등본(초본)에 발급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A.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발급 받은 후 첨부

Q7. 공고일 전에 발급받은 등본을 제출해도 되는지?

A. 주민등록등본, 자격이력내역서의 경우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Q8. 등본 발급 시,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A. 신청자 본인 주민번호 앞자리와 노원구 전입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Q9.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을 조회했는데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
A. 로그인 화면과 조회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뜬 화면을 캡처하여 zip파일로 제출 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서울청년포털 FAQ 바로가기](#) 참고)

Q10. 공동인증서가 없어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A. 온라인 발급 외의 다른 방법으로 발급하여 제출(붙임1 참조)

Q11. 퇴직증명서가 따로 없지만,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을 경우
A. 사업장에 퇴직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상실 신고를 완료하여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반영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Q12. 공고일 후에 자퇴(제적)한 경우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A. 공고일까지 재학생 혹은 휴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신청 대상자가 아님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졸업(수료, 제적)상태여야 신청 가능

Q13. 졸업증명서 대신 학위증명서나 졸업장 제출이 가능한지?
A. 공식 발급한 문서라면 모두 인정함

Q14. 외국 학교에서 졸업(수료, 제적)한 경우
A. 외국 학교도 공고일 기준으로 졸업(수료, 제적)한 상태인 사람만 신청 가능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공식문서만 인정

Q15. 수료증명서에 수료 일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A. 성적증명서나 학적부, 학적증명서 등 마지막 이수 학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료증명서와 함께 제출

Q16. 2019년 2월에 졸업(수료, 제적)했는데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A. 2019. 1. 1. ~ 2021. 8. 31. 기간 내에 졸업(수료, 제적)한 경우 신청 가능

Q17. 평생교육원 졸업도 최종학력으로 인정 되는지?
A.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와 특수학교(도솔학교, 동천학교 등)도 최종학력으로 인정

Q18. 공고일 이후 실직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퇴직상태이고, 실업급여 수급중이 아니거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A. 신청 가능(단,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Q19. 취업장려금 선정 완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한지?

A. 국민취업지원제도 측에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

Q2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이탈자인데 신청 가능한지?

A. 신청 가능(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 없는 경우 가능)

Q21. 20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지?

A. 신청 가능(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 없는 경우 가능)

Q22. 2021년에 청년수당을 받았는데(혹은 현재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지?

A. 신청 불가

Q23.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본인명의로 아닌 경우 /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A.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02-2116-0645~6)으로 문의

Q24. 노원사랑상품권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A.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로페이 형태로 사용가능

자세한 사항은 링크([바로가기 클릭](#))된 페이지 하단의 소비자 가이드 참고

Q25. 노원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사용 가능한지?

A. 노원구 내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단, 아래 제로페이가맹점에서는 사용 불가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및 사행업종
- 연매출액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교과, 외국어 등 입시학원
- 대기업계열 영화관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 Z-MAP(지맵) App 다운로드 실행 후 "지역사랑ON" 체크 후 사용처 확인

끝.